

<p>□자치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및 조직권 등 제도적 저해요인 정비 등</p> <p>II. 위원회 활동내역</p> <p>가. 회의개최(2회)</p> <p>□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제122회 임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2000.9.25(월) 15:58~16:11 ○장 소 :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 ○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선임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 김성규(민주당) -간 사 : 송미화(민주당), 박주웅(한나라당) <p>□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제124회 임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2001. 2. 22(목) 15:42~17:13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예산실소관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자 : "김우석" 기획예산실장 -보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 지방이양 추진경위, 실적, 2001년도 추진계획 등 ·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 전국시·도지사협의회운영 등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자 : "김건진" 행정관리국장 -보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 호적사무 전산화사업 추진 · 선거사무 추진계획 ·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원조정 추진 등 <p>나. 간담회 개최(1회)</p> <p>□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제124회 임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2001.2.13(화) 16:20~17:00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회별관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인원 : 9명(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 ○주 재 : 위원장(김성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 기획예산실, 행정관리국 지방자치발전관련 2001년도 업무보고 -현안사항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에 구성된 지방자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 관련 현안사항 논의 등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의안번호</td> <td style="width: 15%;">826</td> <td style="width: 30%;">제안년월일 : 2001. 3. 13</td> <td style="width: 40%;">제안자 : 운영위원장</td> </tr> </table> <p>I. 주 문</p> <p>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p> <p>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p> <p>II. 제안이유</p> <p>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반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에 보조를 맞추어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게 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의안번호</td> <td style="width: 15%;">827</td> <td style="width: 30%;">제안년월일 : 2001. 3. 13</td> <td style="width: 40%;">제안자 : 운영위원장</td> </tr> </table> <p>I. 주 문</p> <p>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p>	의안번호	826	제안년월일 : 2001. 3. 13	제안자 : 운영위원장	의안번호	827	제안년월일 : 2001. 3. 13	제안자 : 운영위원장
의안번호	826	제안년월일 : 2001. 3. 13	제안자 : 운영위원장						
의안번호	827	제안년월일 : 2001. 3. 13	제안자 : 운영위원장						

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바, 의원 각자가 의원 윤리강령, 의원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Table with 2 columns: 의안번호 (828)

제안년월일 : 2001. 3. 13
제안자 : 운영위원장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 시민의 장묘문화를 개선 정착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매장(埋葬)중심의 장묘문화가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잡식과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서울시는 대도시라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묘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의 의식진환, 장묘제도의 개선, 장묘시설의 정비 및 확충, 화장시설 및 납골시설을 정비 확

충하여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새로운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Table with 2 columns: 의안번호 (829)

제안년월일 : 2001. 3. 13
제안자 : 운영위원장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 인력의 활용 극대화 그리고 관련 각종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Table with 2 columns: 의안번호 (830)

제안년월일 : 2001. 3. 13
제안자 : 운영위원장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